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8월 3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(인원)	근무기간	근무부서	담당직무 내용
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	시간선택제 임기제 『라』 급 (1명)	1년	노원구 안전도시과 스마트사업팀	○ 드론산업육성 시스템 구축 및 체계 확립 ○ 공공분야 드론 활용 문제해결형 사업발굴 및 추진 ○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 및 민·관·군 협업업무 수행 ○ 드론아카데미 운영 총괄 및 교관 ○ 둘레길 드론 순찰 및 드론업무 협업지원 ○ 이동형재난안전차량 운영 및 관리 ○ 스마트시설물 구축 및 운영 ○ 그 외 드론 관련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

- ※ 실적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
- ※ 임용일 : 2026. 9월초 예정 (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29조의3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요건

○ 공통 응시 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응시연령: 만18세 이상
- 지역 및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선발분야	응시자격요건
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	【필수자격】 ○ 「항공안전법」 제125조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(드론) 1종 조종자 및 자격증 소지자
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】 ·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대학·부설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항공 및 드론 관련 실무경력 ※ 항공 및 드론(무인이동체) 분야 : 항공교통, 항공법, 항공우주, 항공전자, 항공기계, 항공기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

4. 보수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용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(단위: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근무시간 적용 시 기본연봉액
8급(상당)	62,096	44,296	38,759

※ 연봉의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 한함)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)

- 주당 근무시간 : 35시간

5. 시험방법

-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

-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요소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시 노원구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.
 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 -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6. 시험일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기 간: 2026. 8. 5.(수) ~ 8. 13.(목) (근무시간에 한함 / 12:00~13:00 제외)
- 방 법: 방문접수(평일 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 및 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하여야 함.
- 접 수 처: 노원구청 안전도시과 스마트사업팀
 - 주소: (01689)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(상계동) 노원구청 3층 안전도시과 스마트사업팀
- ※ 제출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
- ※ 응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방문 접수완료된 서류에 한하고, 대리 또는 팩스 등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,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
시험구분	일 시	장 소	합격자 발표
서류전형	2026. 8. 14.(금)	안전도시과 회의실	2026. 8. 18.(화)
면접시험	2026. 8. 21.(금)	구청 4층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회의실	2026. 8. 24.(월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바람)

○ 합격자 발표

- 방 법: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7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

-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 (본인자필로 작성)
 - ※ 반명함판 사진(3.5cm×4.5cm / 6개월 이내 탈모정면상반신 촬영 / 컬러) 2매 별첨
- 응시수수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(라급 5,000원)
 - 구입장소: 노원구청 2층 재무과 지출팀
 - ※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됩니다. 단,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-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5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6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별지7호 서식) 1부
 - ※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,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- 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※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기관 직인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 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
 - ※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8호 서식) 추가 제출
 - ※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나.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
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9호 서식) 1부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각1부

<제출서류 공통사항>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과(☎02-2116-34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제출서류 서식 각 1부